

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가. 지방공기업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재정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*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1) 지방공기업 등 금고 지정 근거 보완 및 세부 선정 기준 마련

2) 금고 평가기준 상 협력사업비 비중 최소화

*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[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-2019(2025.07.15.)호]

나.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을 반영하여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

다. 계약 및 지출업무 선택과 집중을 위해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에 맞춰 지출 관련 기준금액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정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(제70조제2항)

1) 지정금융기관 선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내규*에서 별도로 정함

* 인천도시공사 지정금융기관 선정 내규('26. 상반기 제정·등록 예정)

나.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(제153조제2항제2호)

다. 지출예산 집행기준을 재정사항 합의생략대상에 맞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(제153조의2제2항)

3. 사전절차

- 가. 사규안 입안예고 : 2026. 1. 15. ~ 2026. 1. 21.
- 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: 2026. 1. 15. ~ 2026. 2. 4.
- 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: 2026. 4. 13. 원안가결
- 라. 이사회 의결 : 2026. 5. 21. 수정가결
- 마. 市 승인 : 2026. 5. 26. 수정안승인
재무관리처-6843(2026. 5. 27.)호

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6월 2일

규정 제733호

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

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사장은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내규로 정한다.

제153조제2항제2호 중 “300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한다.

제153조의2제2항 단서 중 “3백만원”을 “6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지정금융기관) 사장은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(이하 “지정금융기관”이라 한다)을 수납 및 지급사무를 총괄 취급하는 총괄출납취급금융기관, 수납 및 지급사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출납취급금융기관, 수납업무의 일부를 취급하는 수납취급금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 <신 설> 제153조(재정사항 합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<u>300만원</u> 미만의 예산집행 품의를 할 경우 ③ (생략) 1. ~ 6. (생략) 제153조의2(지출예산의 집행) ① (생략) ② 각 부서장은 공사·제조·용역의 도급, 물건의 매입·수리·운반 등에 관하여는 계약담당 부서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(소모품의	제70조(지정금융기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<u>사장은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내규로 정한다.</u> 제153조(재정사항 합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600만원</u>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제153조의2(지출예산의 집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매입·제조·운반, 소규모용역 및 임차, 인쇄물의 경우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<u>3백만원</u> 미만으로 한정한다)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③ ~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<u>600만원</u> ----- 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

1. 개정이유

가.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지급 규정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출산축하금 지급 규정 마련(제7조, 제8조의2 및 별표2)

- 1) 직원 또는 그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정하도록 함
- 2)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된 급여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한 사내 공통 지급규정 마련

나. 자구수정 및 조문 정비(제8조 및 별표1)

3. 사전절차

가. 사규안 입안예고 : 2026. 3. 13. ~ 2026. 3. 19.

나. 홈페이지 사전게시 : 2026. 3. 13. ~ 2026. 3. 19.

다. 사규심의위원회 심의: 2026. 4. 13. 원안가결

라. 이사회 의결 : 2026. 5. 21. 수정가결

마. 市 승인 : 2026. 5. 26. 수정안승인

경영관리처-6525(2026. 5. 27.)호

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

2026년 6월 2일

규정 제734호

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

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복리후생비 지급)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직책수행비
2. 출산축하금
3. 기타 후생비

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직책수행비) ① 임원과 3급 이상의 직원 중 보직을 받은 직원에게 별표 1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직책수행비는 휴직, 정직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

제8조의2(출산축하금) ①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부부직원의 경우에는 신청자 1명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축하금에 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근무중인 임직원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여 출산축하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되,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[별표 1]

현행

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

구 분	지급대상	지급액		비고
직책 수행비	임원과 3급 이상의 직원 중 보직을 받은 직원	사장	월1,000,000원	○ 매월 20일 지급
		감사, 상임이사, 본부장	월800,000원	
		실장, 단장, 처장 (동등 직책보임자)	월650,000원	
		팀장 (동등 직책보임자)	월500,000원	

개정안

직책수행비 지급구분표

구 분	지급대상	지급액		비고
직책 수행비	임원과 3급 이상의 직원 중 보직을 받은 직원	사장	월1,000,000원	○ 매월 20일 지급
		감사, 상임이사, 본부장	월800,000원	
		실장, 단장, 처장 (동등 직책보임자)	월650,000원	
		팀장 (동등 직책보임자)	월500,000원	

신 설

[별표 2]

출산축하금 지급구분표

구 분	지급대상	지급액		비 고
출산 축하금	출산한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	첫째 자녀	1,000,000원	
		둘째 자녀	2,000,000원	
		셋째 자녀 이상	3,000,000원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(복리후생비 지급) ①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1. 직책수행비</u> <u>2. 삭제</u> <u>3. 기타 후생비</u> <u>② 복리후생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휴직 또는 정직,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</u> <u>< 신 설 ></u> <u>< 신 설 ></u>	<u>제7조(복리후생비 지급)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1. 직책수행비</u> <u>2. 출산축하금</u> <u>3. 기타 후생비</u> <u>제8조(직책수행비) ① 임원과 3급 이상의 직원 중 보직을 받은 직원에게 별표 1에 따라 직책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② 직책수행비는 휴직, 정직 또는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</u> <u>제8조의2(출산축하금) ① 직원 또는 직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별표2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②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</u>

현행	개정안
	<u>직원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부부직원의 경우에는 신청자 1명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</u>